

언론과 법

언론소송과 판결

저주의 굿판 게재 청와대 비서관, 동아일보에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조해섭 부장판사)는 16일 동아일보가 '청와대가 지난해 7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사를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자사의 보도를 비난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우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병완 전 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 양정철 당시 국내 언론비서관 등 3명을 상대로 낸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양정철 당시 국내 언론비서관이 작성·게재한 청와대 브리핑 각 기사의 전체적인 취

지는 원고의 수도이전계획에 대한 보도 태도를 종전과 비교해 비판하고자함이 주된 것"이라며 "비록 '저주의 굿판' 등 다소 자극적인 어휘를 사용했다고 해도 이는 공적인 존재인 원고에게 지나치게 모멸적이고 인신 공격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없고 수사적인 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 양정철이 기사를 작성·게재한 행위는 전반적으로 언론기관인 원고의 보도태도에 대한 의견표명 내지 논평에 해당하고 그 표현에 있어서도 위법할 정도로 모멸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청와대가 지난해 7월 청와대 브리핑의 '조선·동아는 저주의 굿판을 걸어치워라', '당보인지 신문인지 태도를 분명히 하라' 등의 기사를 통해 "피고들이 동아일보의 보도내용을 선별적으로 인용하고 의도적으로 편집해 보도내용의 실제 취지와 다르게 오인되도록 유도하거나 보도내용의 취지를 왜곡 해석해 독자들에게 제시하고 정당한 언론비판의 한계를 넘어서 악의적인 비방을 해 원고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데일리 2005년 8월 16일

병풍보도 인터넷매체에 또 배상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조해섭 부장판사)는 12일 전태준 전 의사령관이 이른바 '병풍사건'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와 신기남 의원, 김대업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오씨 등은 모두 3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2002년 5월 신 의원과 오마이뉴스에 '전씨가 한나

라당 이회창 총재 아들 정연 씨의 정밀 신체검사서류(신검부표)를 없애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을 제보했고, 오마이뉴스가 이를 보도했는데 문제의 정보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오씨는 당시 오마이뉴스 보도를 진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지만 오마이뉴스 보도에 대한 또 다른 손해배상 사건에서 대법원이

오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당시 보도를 진실로 믿을 만한 이유도 없었음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 의원에 대해서는 "문제의 정보를 근거로 방송 등에서 병역비리 은폐 의혹을 제기한 것은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2005년 8월 13일

김성호 전 의원, 월간조선 상대 손해소

김성호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9일 월간조선과 조갑제 전 대표 등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월간조선이 자신을 재미동포 여성을 성추행해 자살로 몰고 간 파렴치한 인간으로 보도해 회복이 불가능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또한 "성추행 의혹은 전혀 사실

과 다르며 보도의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생활 영역에 대한 악의적 비난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월간조선이 사실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없이 한나라당 대변인실의 발표를 그대로 보도한 것은 무책임한 황색저널리즘 보도의 전형"이라며 "금전적 배상만으로는 명예회복이 부족한 만큼 정정보도문도 1회

게재하라"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의 성추문 의혹은 지난해 2월 한나라당 부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제기됐으며, 월간조선은 지난해 3월호의 '낙선운동 벌이는 총선연대 그들은 과연 공정한가?'라는 기사에서 이를 인용 보도했다.

경향신문 2005년 6월 9일

“조선일보, 총선관련 시민단체에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김선흥 부장판사)는 17일 2004 총선시 민연대(총선연대) 등 19개 시민단체가 왜곡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조선 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천 9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조선일보가 ‘권력 멀리해야 할 단체가 정부 돈 받고 낙선은 동’이라는 기사를 써 시민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 “총선연대에 1천 5백만 원, 18개 시민단체에 3백만 원씩 모두 6천 9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총선연대 등 19개 시민단체는 “정부가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사실과 낙선·언론운동을 하는 단체들 중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있다는 점을 교묘히 연결해 시민단체의 중립성·도덕성을 훼손했다”며 14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2005년 8월 17일

서울중앙지검 ‘명예보호 전담검사제’ 시행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연예인 X-파일’ 사건 등 인터넷과 사실정보지의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사례가 심각한 수위에 도달함에 따라 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하는 ‘명예보호 전담검사’를 지정

해 관련 범죄를 심층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사상 처음 실시되는 ‘명예보호 전담 검사’에는 형사 1부의 신성식(40·사시37회) 검사가 임명됐다. 신 검사는

앞으로 국내외 명예훼손 법률, 판례 등을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연구하고 중요 명예훼손 사건은 직접 맡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국일보 2005년 5월 19일

‘인터넷에 타인명의 저질 글 게재’...명예훼손 첫 기소

남의 명의로 인터넷에 저질스런 글을 올린 사람에게 검찰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처음으로 기소했다.

친고죄인 이 법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의 중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대 법대생 김도 씨는 지난해 7월 포털사이트에 자신의 명의로 ‘유영철 같은 의인이 많이 나와야 한다’, ‘더러운 직업의 여자들은 토막살해 해야 한다’, ‘유영철이 무슨 죄냐. 더러운 안마사 청소해서 잘한 사람이지’라는 등 저질스런 글이 170여 개나 게재된 사실을 알게 됐다.

영똥한 비난을 뒤집어쓰게 된 김씨는 경찰에 범인을 처벌해달라며 진정했지만 경찰도 쉽게 범인을 찾지 못해 사건은 1년 가까이 내사(內査) 종결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올 7월 경찰이 서울대 도서관 등에서 상습절도를 한 혐의로 구속된 손모(32.무직)씨를 수사하다 손씨가 다

른 사람들의 주민번호와 이름이 여럿 적힌 수첩과 남의 신분증 여러 장을 갖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실마리가 풀렸다.

손씨는 “남의 ID로 인터넷 채팅하려고 그랬다”고 둘러댔지만 경찰이 과거 인터넷 ID 도용피해 접수사례 중 김씨 사건을 발견해 추궁하자 “김씨가 서울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하지 않으면서 자리만 맡아두곤 하는 게 알기워서 골탕을 먹이려 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검찰은 지난 5일 손씨를 일단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했지만 김씨의 피해 사건은 내부 법률 검토를 위해 기소를 유보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손씨가 김씨를 비방한 게 아니라 유영철 사건 피해여성들을 비방한 것이고 그 내용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의견과 손씨가 직접 김씨를 비방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네티즌들에게 잘못된 사실을 인식시켜 김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모두 나왔다.

서울중앙지검은 1차장과 형사부장 4명, 사건 주임검사와 명예훼손 전담검사

가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의 판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16일 손씨를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손씨가 ‘김씨에 대한 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지만 마치 김씨가 저질스런 글을 쓴 것처럼 네티즌들이 오인하게 만들었다면 허위사실을 적시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봐야 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번 공소제기와 별도로 이번 사건처럼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저질스런 글을 게재하거나 명의를 도용해 글을 올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처벌하는 명시적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입법건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상에서 타인 명의를 닮네임(별명) 형태로 표시하고 저질·외설스런 글을 게재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어 이들을 엄중처벌 할 필요가 있는 만큼 법원의 판례를 받아보기 위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5년 8월 16일

현직 판사들이 정리한 언론 판례

언론 보도를 둘러싼 분쟁의 양상이 복잡해지고 언론중재법이 28일부터 시행되는 등 언론분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언론분쟁에 관한 판례를 정리한 실무 해설서가 나왔다.

서울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을 지낸 윤재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함석천 춘천지법 원주지원 판사는 생생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언론분쟁과 법」(청림출판)을 펴냈다.

이 책은 언론분쟁의 모든 법적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라 자주 문제가 되는 쟁점을 압축해 법리를 대법원 판결을 기초로 정리, 해설한 현장 실무용의 저

술서. 대법원 판결과 선험적 가치가 있는 하급심 판결들을 골라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했다.

쟁점별로 본문과 쟁점정리, 사례해설을 실는 구성방식을 택했다. 에세이 형식으로 읽기 편한 본문은 윤재운 부장판사가 기자회견의 월간지인 '기자통신'에 2년간 연재했던 칼럼을 정리한 것.

저자들은 언론분쟁에는 공공성과 진실성, 상당성 등 세 가지 키워드가 있으며 이중 공공성을 포함해 두 가지만 갖추면 면책된다고 말했다. 언론보도가 공공성이 있고 진실하거나 진실하지 않

더라도 상당성이 있으면 오보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또 이러한 키워드는 언론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생에도 사랑과 배려로(공공성) 진실하게(진실성) 무리 없이 합리적으로(상당성) 사는 것이 삶의 기본 지혜일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 책은 유명 여성 앵커의 사생활 보도사건에서 통조림 포르말린 사건, 죽은 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보호 법익, 만평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례를 담았다.

연합뉴스 2005년 7월 31일

“유명 기업인 사생활 보도, 사실에 기초했다면 정당”

일반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유명 기업인의 사생활을 진실에 기초해 보도했다면 언론사에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6부는 여성 벤처기업인 이모(39)씨가 “이혼 경력 등을 다룬 기사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일요신문사와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이미 언론과 자서전 등을 통해 자신의 사생활 부분 중 긍정적인 면을 적극 홍보해 더욱 유명해졌다”며 “이씨의 사생활 중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 보도돼 프라이버시가 침해됐어도 대중은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을 가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도하게 된 기초적 사실 관계가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고 일부 표현이 문제되더라도 이는 의견 내지 평

가에 불과하고, 그 평가는 언론의 건전한 비판 작용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일요신문이 “이씨가 과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능력이 안 돼 가족을 가지지 못했다’고 하는 등 미혼인 것처럼 밝혀 왔고 아들의 양육을 방치했다”고 보도하자 신문사를 상대로 10억 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중앙일보 2005년 8월 16일

김창룡 씨 유족, 백범 암살배우 보도에 소송

안두희(1996년 사망)씨에 의해 백범 김구 선생의 암살 배후로 지목됐던 김창룡(1956년 사망)씨의 유족은 3일 “허위사실로 고인과 유족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D사 등 4개 신문사와 민족문제연구소 및 소속 교수 2명 등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는 매년 대전국립묘지에 안장된 김씨의 묘 앞에서 “항일조직을 색출하고 백범 선생의 암

살 배후로도 지목된 자가 애국지사들과 함께 누워있는 것은 부당하다”며 묘 이전 촉구집회를 열었고 이들 언론사는 지난해 광복절을 앞두고 이 집회를 기사화했다.

유족은 소장에서 “생존한 군 관계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암살사건이 발생한 1949년 6월 특무대는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고 김씨는 제1연대 정보과 소령이었으므로 안씨의 증언은 거짓말”이라며 “허위사실을 주장한 연구소

와 이를 기사화한 언론사 모두 유족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룡(1920~1956)씨는 1940년 일본 관동군 헌병대에 입대한 뒤 조선경비대 소위, 한국전쟁 당시 육군본부 정보원, 군·검·경 합동수사본부장, 육군 특무부대장 등을 지냈으며 1992년 안씨는 “특무대장 김창룡의 지시로 백범을 암살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2005년 8월 3일

“언론사간 소송은 스스로 언론자유 침해”

한 현직 프로듀서(PD)가 우리나라 언론사간 소송현황을 ‘집대성’ 한 논문을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MBC시사고양국 윤길용 PD는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 언론사간 소송의 원인과 그 유형에 관한 연구-법원 판결문에 나타난 언론자유 개념을 중심으로〉에서 우리나라 언론사간 소송현황과 지금까지의 사례 연구를 통해 소송의 원인과 특징 등을 분석했다.

윤 PD는 지난 1989년부터 2004년까지 국내 언론사간 소송 건수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이 기간 동안 소송 건수는 모두 67건으로 그중 2001년도가 가장 많은 19건을 차지했다. 소송 형태별로는 민사소송이 81건(87%)으로 가장

많았고, 형사소송은 12건(13%)으로 조사됐다.

매체별로는 신문사와 신문사간 소송이 20건(29.42%)으로 가장 많았으며, 방송사와 신문사간 소송은 19건(27.9%)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방송사와 방송사간의 소송은 4건(5.9%)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윤 PD는 언론사간 소송원인을 민주화와 언론개혁 운동에 따른 사회변화로 설명했다. 하지만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소송부터 제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정당한 이익제거나 후속 보도를 막기 위한 수단이라고 윤 PD는 지적했다.

윤 PD는 특히 언론사들이 충분한 고려 없이 즉흥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이렇다보

니 재판에 들어가기도 전에 소를 취하는 일이 잦고, 그만큼 언론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윤 PD는 언론사간 소송이 서로의 치부를 묵인해주는 ‘침묵의 카르텔’을 사라지게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분쟁의 해결방식을 법정다툼에 의존함으로써 언론 스스로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윤 PD는 “언론사간 무차별적인 소송은 상호비평을 통한 건전한 관계를 훼손하기 쉽다”며 “소송의 남발은 결국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는 만큼 언론사간 소송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오늘 2005년 8월 10일

“인터넷상 개인 명예훼손 포털부터 책임져야”

K씨·교사 자살사건 등 최근 포털사이트에서 일어난 인신공격·명예훼손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들의 모임, ‘포털 피해자를 위한 모임(포피모·대표 변희재/사무처장 이정훈)’이 6대 포털사이트에 공동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지난 7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날 오전 11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변희재 포피모 대표는 “사이버상에서 일반인들이 입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각 포털사이트에 유해성 게시물 삭제 등을 요구했으나 포털사들이 이를 ‘방기’했다”며 “사회적 공인이 아닌 일반인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에 대해 대표적인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 야후, 네이트닷컴, 엠파스, 파란 등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리겠다. 다음 주 정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그는 미리 나눠준 기자회견문에서 “각 포털 사이트의 피해신고센터는 전화·이메일은 안 되고 오직 방문

접수나 우편접수만 된다. 우편접수용 서류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피해자가 네티즌들로부터 무차별 명예훼손을 당한 뒤”라며 “실시간으로 수 만 개의 게시물 올라오는 최첨단 기술을 선보이는 포털사가 게시물 삭제요청 조건을 까다롭게 해놓은 것은 페이지뷰를 늘려 돈을 벌기 위한 것 아니냐”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포털사이트 후에 1차적으로 보도를 한 언론사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무책임한 보도를 한 언론사가 있는 반면 무책임한 보도를 비판한 언론사도 있어 차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미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요청은 다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법정대리인을 맡을 정재욱 변호사는 “약관에 의해 게시물 삭제 권한을 부여받은 포털사가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게시물을 방기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이를 장려하는 것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며 “정보통신이용법 등 법은 있으나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던 것

을 이번 소송을 통해 포털사에 윤리적 책임과 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 선례로 만들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그는 또 “진실한 내용이어도 대중에 알려질 의무가 없는 개인사적 내용을 그의 실명과 소속, 주소 등을 거론하며 보도하는 것은 명백히 명예훼손”이라며 “무분별한 유포행위를 방조한 가해자가 포털에 있는 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이전에도 유사한 상황에서 민사상 책임을 물어 승소한 예가 있다”고 말했다.

변 대표는 유해성 게시물 해결방안으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이미 실명 인증제를 하고 있는데 실시하고 있는 제도를 해야 하는가 아닌가하고 다시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그보다 실시되고 있는 인증제를 제대로 관리·감시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 2005년 7월 8일